

## 재외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03년 3월 26일  
보건사회부 건강국

작년 12월 5일 오사카 고등재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 건강수첩(이하 「수첩」이라 함)을 취득하고 수당 지급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출국한 후로도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일단 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출국으로 인해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지방 자치법상 시효(5년)에 따라 소멸되지 않은 부분의 미지급 수당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질문과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 질문 1 재외 원폭피해자에 대한 수당은 누가 지급합니까?

일본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縣),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에서 계속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과거 5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도 일본을 떠나기 전에 수당을 지급했던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에서 지급합니다. 단지 사무 처리상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 2 건강관리수당 이외의 수당도 대상이 됩니까?

건강관리수당 이외에도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원자폭탄소두증(小頭症) 수당 및 보건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 질문 3 과거 5년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11년전에 일본에 들어와 건강관리수당 인정을 받은 사람(지급기간 5년간)에 대해서도 5년분의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단 수당 지급인정을 받았고 출국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인정 기간의 미지급 기간분의 수당에 대해 지방 자치법상의 시효(5년)에 걸리지 않는 분